

경운대학교 사회봉사지원센터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센터는 경운대학교 사회봉사지원센터(이하 ‘사회봉사센터’)라 칭한다.

제2조(목적) 센터는 첫째, 학내구성원들의 봉사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본교의 교육 이념 구현에 이바지한다. 둘째, 사회봉사활동을 조직화하고 전문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 하고 실천한다. 셋째, 사회봉사활동을 인증하고 이와 관련된 공신력을 보장한다. 넷째, 재학생들이 국내외 봉사활동을 통하여 글로벌 능력향상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섯째, 사회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제2장 기 구

제3조(직제와 조직) 사회봉사센터의 직제와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센터장은 학생진로개발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2. 센터는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실무인력을 둘 수 있다.
3. 센터의 사업 수행을 위해 경운봉사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조직) 사회봉사센터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봉사센터의 제반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사회봉사센터는 학생 및 교직원의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행정 및 봉사 활동으로 구분한다.

제5조(기능) 사회봉사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9.01.>

1. 사회봉사활동의 계획·시행 및 지원
2. 사회봉사과목 운영 및 이력관리
3. 교내 봉사단체운영 및 관리
4. 공동체 및 인성함양을 위한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
5. 사회봉사 전산망 운영 등 사회봉사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제3장 교과목 운영 및 인증서 발급

제6조(교과목운영) 교과목명은 '사회봉사'로 하고 매학기 일반선택으로 교무처에서 개설하고 사회봉사센터에서는 관련 업무의 절차수행 및 사회봉사활동내역을 인정하고 관리한다.

제7조(교과목이수 절차) 교과목 이수를 위한 절차는 수강신청 후 학기말 별도의 공고기간 중 사회봉사 학점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봉사지원센터에 신청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한다.

제8조(교과목 이수) 교과목의 이수는 이론 수업을 2시간 이상 이수하고 학기당 3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과목 이수에 필요한 봉사시간을 채울 수 없을 경우에는 학점 이수에 필요한 봉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09.01.>

제9조(학점인정) ① 사회봉사활동 특별학점 인정범위는 1일 5시간 이내, 30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하며, 재학 중 2학점까지 인정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학점인정시간을 단축 할 수가 있다. <개정 2020.09.01.>

② 사회봉사활동은 재학 중 실시한 봉사활동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이미 인정받은 봉사활동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③ 기타 논의되지 않은 사항은 경운대학교 특별학점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사회봉사활동의 인정) ① 사회봉사활동 인정은 '1365자원봉사 포털',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센터(VMS)' 및 우리대학이 인정한 봉사기관을 통한 사회봉사활동과 더불어 우리 대학교의 장애학생 도우미 봉사활동의 경우에 인정한다.

② 교내 및 해외 봉사의 경우 사전 해당 부서장의 요청에 의해 사회봉사지원센터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인정 할 수 있다.

③ 기타 사회봉사활동의 인정은 학생 및 기관의 심의요청에 의해 센터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인증서 관리 및 발급) 사회봉사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이력을 관리하고 요구 시 총장명의로 사회봉사 인증서를 발급한다.

제4장 장학 및 특전

제12조(사회봉사장학 및 특전) ① 사회봉사 실적이 우수한 학부(과), 동아리 및 개인(임장지도교수 포함)을 선발하여 표창 및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장학금 지급, 취업추천, 해외연수 및 해외 자원봉사자 선발 등에 있어서 사회봉사 실적 우수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봉사장학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경운대학교 장학규정에 따른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3조(설치) 사회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4조(구성) 사회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총장이 임명한다.
2.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3. 간사는 사회봉사 실무자로 한다.

제15조(임기) 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봉사활동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봉사활동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회봉사활동 과목 이수절차 및 인정에 관한 사항
4. 연간 활동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 및 개선안 심의 및 자문
5. 기타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제17조(회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만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9.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교과목 이수), 제9조(학점인정)1항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